등록금 반환 업무처리

1. 등록금 반환은 『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』 및 『학사운영규정 제41조』를 따른다.
2. 등록금 반환 시 일괄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세부적인 반환기준일자는 [별표1]에 따라 처리한다.
3. [별표1]에 따라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한다.
   1) 학기개시일과 개강일이 다른 경우 학칙 제21조를 우선하여 따른다.
      - 제1학기: 3월 1일, 제2학기: 9월 1일
      - 단, 학사 및 석박사과정 이외의 과정은 예외
   2) 등록이월생에 한하여 종전의 등록금 반환기준일자를 적용하여 처리한다.
   3) 반환사유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익일에 반환사유의 말일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.
4.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『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』에 따라 처리한다.
   - 수강학점에 따라 수업료감면금액은 [별표2], [별표3]과 같다.
   - 초과된 수업료는 등록금 반환기준일자와 상관없이 반환한다.
5. 기타의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한다.

[별표1] 등록금 반환기준일자 (2015. 3. 1 시행) - 자퇴자 등

반환사유 발생일 (시행일 이전)	반환사유 발생일 (시행일 이후)	반환금액	비고
3월 2일 이전 또는 9월 1일 이전	3월 1일 전일 또는 9월 1일 전일	수업료전액 환불	학기개시일 전일까지
3월 3일~4월 1일 9월 2일~10월1일	3월 1일~3월 31일 9월 1일~9월 30일	수업료의 5/6 환불	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(단, 최종등록기간 내 전액환불)
4월 2일~5월 1일 10월 2일~10월 31일	4월 1일~4월 30일 10월 1일~10월 31일	수업료의 2/3 환불	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
5월 2일 ~5월 31일 11월 1일 ~11월 30일	5월 1일 ~5월 31일 11월 1일 ~11월 30일	수업료의 1/2 환불	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
6월 1일 이후 12월 1일 이후	6월 1일 이후 12월 1일 이후	반환하지 아니함	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

※ 학사운영규정 제22조 제4항의 휴학 기간 내에 휴학하는 경우와 최종등록기간까지 휴학이나 제적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(2017년 2월 1일부터 적용)

※ 2015년 등록금이월제도 폐지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 후 휴학한 등록이월자가 자퇴할 경우에는 [별표1]의 반환사유 발생일(변경 전)을 적용하여 반환사유 발생일인 최초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수업료를 반환

[별표2] 대학 수업연한 경과자에 대한 수업료 감면기준

구 분	금 액
1 - 3 학점까지	수업료의 5/6 해당액(1/6납부)
4 - 6 학점까지	수업료의 2/3 해당액(1/3납부)
7 - 9 학점까지	수업료의 1/2 해당액(1/2납부)

※ 수업연한이 경과한 경우에만 해당
※ 공과대학 건축학과 11학기 이상 등록대상자
※ 복수전공 진입 후 3학기 이상 등록대상자
※ 편입학 진입 후 5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(단, 공과대학 건축학기 7학기 이상 등록대상자)

[별표3] 일반(특수·전문) 대학원 수업연한 경과자에 대한 수업료

구 분	금 액
1 - 3 학점까지	수업료의 1/2 해당액(1/2납부)

※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으로 수업연한이 경과한 경우에만 해당

『학사운영규정 제 41조』

제41조(등록금 반환기준) ① 학기 개시일(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) 전까지 제40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.

②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,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
1.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: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2.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: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3.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: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
③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.

④ 휴학생 및 제적생의 등록금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. 다만, 제22조 제4항의 휴학 기간 혹은 최종 등록 기간까지 휴학이나 제적하는 경우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. <신설 2017.2.1.>